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해양경찰청에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5급 1명)을 증원하고,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인 지방해양경찰청에 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1명(경위 6명, 경사 6명, 경장 4명, 7급 6명, 8급 5명, 9급 4명) 및 노후 함정을 대체하는 신규 함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6명(경감 2명, 경위 4명, 경사 2명, 경장 6명, 순경 4명, 8급 4명, 9급 4명)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,

지방해양경찰청 항공 조종사의 전문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특정직공무원 정원 12명(경위 12명)을 일반직공무원 정원 12명(전문경력관 가군 12명)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3년도 기정 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2. 00. ~ 2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중 총계 “520”을 “521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7”을 “98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96”을 “97”로 한다.

별표 5 중 총계 “12,481”을 “12,538”로 하고, 경찰공무원 계 “11,335”를 “11,357”로 하며, 총경 이하 “11,326”을 “11,34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,146”을 “1,181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1,146”을 “1,169”로 하고, 그 다음에 “전문경력관 12”를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4]

해양경찰청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520</u>	<u>52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일반직 계	<u>97</u>	<u>98</u>	+1
•	•	•	
3급 또는 4급 이하	<u>96</u>	<u>97</u>	+1

[별표 5]

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2,481</u>	<u>12,538</u>	+57
경찰공무원 계	<u>11,335</u>	<u>11,357</u>	+22
·	·	·	
·	·	·	
총경 이하	<u>11,326</u>	<u>11,348</u>	+22
일반직 계	<u>1,146</u>	<u>1,181</u>	+35
3급 또는 4급 이하	<u>1,146</u>	<u>1,169</u>	+23
<u>전문경력관</u>	<u><신 설></u>	<u>12</u>	+12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5